

청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가단3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청주시 서원구 D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9. 14. 접수 제114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9. 14. 접수 제11443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E이 일제 강점기 하인 1934. 9. 13. 사정을 받았고, E의 장남 F은 10남매를 두었는데, G가 큰아들이고 피고는 막내아들이며, 선정자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9. 14. 접수 제11443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같은 등기과 접수 제114439호로 2017.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보존등기를 ‘이 사건 보존등기’, 위 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일 것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선정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선정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다음 항에서는 피고에 대한 본안 청구에 관하여서만 본다.

3. 본안 청구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일제강점기부터 종중의 분묘를 관리 및 수호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의 중시조 H의 장남 E 명의로 사정을 받아 두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고가 선정자와 공모하여 증여증서 등을 위조하여 사위의 판결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정명의인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오히려, 을 제6호증, 제9호증,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제출한 종중규약(갑 제7호증)이 언제 제정 및 의결되었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2) 원고도 1992년 이전의 종중의 결산장부를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3) 원고가 제출한 종중회의록, 소집통지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4) 원고의 2020. 1.

11.자 정기총회자료 중 ‘A종중토지대장’ 목록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5) 2018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피고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갖추어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기보다는 E이 토지사정으로 원시취득을 하여 피고들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정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

별지